### **메기랜드 ///** 노량진캠퍼스

#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7회 (04/22)

- 1. 다음은 건축법령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.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축사 및 가설건축물
- ②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
- ③ 연면적의 합계가 1,500㎡ 미만인 물류시설(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
- ④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(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된 지역을 제외한다)의 건축물
- ⑤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- 2.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시 확인 서류를 허가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 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들로 짝지어진 것은?
  - A)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
  - ® 연면적이100㎡인 건축물
  - ⓒ 처마 높이가 9m인 건축물
  - ① 높이가 9m인 건축물
  - ⓒ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9m인 건축물
- (1) (A) (B) (C) (D) (E)
- (3) (B)(C)(D) (4) (B)(D)(E)
- (5) (C,D,E)
- 3. 건축법령상 건축선에 관하여 틀린 것은?
-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 선으로 하다.
- ②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, 하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제외한다.
- ⑤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의 위, 아래 부분에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## 객관식진도학습

**부동산공법** 고상철 교수 7회 (04/22)

#### 4.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·공고하려는 경우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.
- ②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(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)에 접하여야 한다.
- ④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, 공원, 유원지,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③의 의무가 없다.
- ⑤ 연면적의 합계가 2천m²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.

#### 5.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?

- ①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
- ②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
- ③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
- ④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
- ⑤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구역

# 6. 농지법령상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<u>아닌</u> 것은?

- ①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·연구·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- ② 주말·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- ③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-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- ⑤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1천500㎡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
## 객관식진도학습

**부동산공법** 고상철 교수 7회 (04/22)

#### 7. 농지법령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이다.
- ② 주말·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.
- ③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시장·구청장·읍장·면장에게 바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⑤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문화재의 보수·복원·이전, 매장 문화재의 발굴, 비석이나 기념탑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가 허용되다.

# 8.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년생식물의 경우는 제외함)

- ①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 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③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.
- ④ 임대인은 질병·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⑤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·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## 객관식진도학습

**부동산공법** 고상철 교수 7회 (04/22)

### 객관식진도학습 정답

#### 1. ③

연면적의 합계가 1,500㎡ 미만인 물류시설(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

#### 2. 4

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 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영 제32조제2항).

- ① 층수가 2층(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) 이상인 건축물
- ② 연면적이 200㎡(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㎡) 이상인 건축물. 다만, 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- ③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
- ④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
-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
- ⑥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- ⑦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
- ⑧ 제2조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
- ⑨ [별표 1]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
- ® 연면적은 200㎡ 이상이어야 안전확인대상 서류제출이므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 ◎ 높이는 13m 이상이어야 하므로 9m는 확인대상이 아니다. ⑥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이어야 하므로 9m 이면 확인대상이 아니다.

#### 3. ⑤

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(垂直面)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지표(地表)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4. (5)

연면적의 합계가 3천m²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.

## **메기랜드** 노량진캠퍼스

#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7회 (04/22)

#### 5. ①

-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·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.
- 1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
- 2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
- 3. 「도로법」에 따른 접도구역
- 4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보전산지

단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(특정한 경우 지정 가능한 경우도 있음)

#### 6. 3

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와 농지전용협의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. 전자는 농지취 독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농업경영계획서의 발급은 불요한다. 그에 비해 후자의 농지전용협의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이지 농업경영계획서 작 성 생략사유가 아니다.

#### 7. ②

주말·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받아야 한다.

#### 8. ①

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.